

담양군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3. 1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각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지역의 여성리더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은 물론,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, 2조)

나.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제3조)

다.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(제4조)

라.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(제5조)

마.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제6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3. 10.~3. 16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–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–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3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새마을부녀회장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담양군 지회의 새마을부녀회 산하의 읍·면 새마을부녀회장(이하 “부녀회장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내용)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해보험(단체보험)
2. 교육훈련
3. 국·내외 선진지 견학
4.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

제4조(편의제공) 부녀회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담양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.

제5조(실비보상)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녀회장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, 회의에 참석한 부녀회장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계획 수립 등) 군수는 매년 부녀회장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
및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